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경고) 요구

제 목 일반구조용 구조장비(○○총) 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계(경고) 울산광역시 ○○본부 ○○○○과 ○○○ ○○○

대 상 자

내 용

○○○ ○○○은 2016. 7.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본부 ○○○○과에서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포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총포의 종류로 ○○총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본부에서는 ○○총과 같은 총포를 입찰을 통해 구매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허가받은 총포 판매·제조업체로 제한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해당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가하였을 경우 그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총포 판매·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총을 구매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본부(○○○○과)에서는 ○○총 등 15종 1,424점(경쟁입찰 14종 1,389점, 조달구매 1종 35점)의 일반구조용 구조장비에 대하여 계약부서인 ○○○○과에 구매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총 등 14종 1,389점 구매 건에 대하여 2017. 3. 28. 입찰공고를 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상사(대표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2017. 4. 24. 계약(283,224,700원)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7. 3. 28. 일반구조용 구조장비 물품 구매 입찰공고 (울산광역시 ○○본부 공고 제0000-00호)를 하면서 나라장터에 ‘○○총(물품분류 번호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시하고, 첨부된 ○○총 구입장비 규격서에도 납품조건에 ‘총포판매업 허가 업체 허가증 및 총포제조명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였다.

하지만 위 관서에서는 입찰 참가업체가 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및 납품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였어야 하고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포 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도소매업체인 ○○상사가 마취총이 포함된 장비구매에 입찰하여 적격심사를 받고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위 관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정한 ○○상사와 계약체결을 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경고)] 위 관련자를 훈계(경고)처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을 납품한 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